

# 1.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준(2학기)-변동됨(빨간색 부분 참고)

대상	등교중지 기간	출결 증빙자료
확진 받은 학생	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입원치료통지서*</li> <li>*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[별지 제 22호 서식]</li> </ul>
격리 통지받은 학생	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격리통지서</li> </ul>
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*	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동거인의 격리통지서</li> </ul>
	<p>※다만,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,  <b>1)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* 학생의 진단검사(PCR 검사) 결과가 음성인 경우</b>  <b>또는 2) 격리통지를 받은 '즉시'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</b></p> <p>*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기준은 날짜 기준이며, 문자 통지 사본 등을 제출함                      (예1) 토요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학생인 경우: 월요일에는 등교가 가능하나, 화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일요일 이후에 통지받은 음성결과를 제출해야 함                      (예2) 화요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학생인 경우: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등교가 가능하나, 금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수요일 이후에 통지받은 음성결과를 제출해야 함</p>	
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	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검사 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(예: 문자 통지 사본 등)</li> </ul>
	<p>&lt;유의사항&gt;                      - 다만, 선제검사(병원·항공 등 직업특성, 대회참여, 이동검체검사 등)의 경우 적용 제외</p>	
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(임상증상 발현 학생)	<p><b>증상 발현 시부터</b>  <b>증상 소멸(호전) 시까지</b>                      (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를 받는 것이 원칙)</p>	<p>[코로나19 검사 결과 '음성'인 경우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(예: 문자 통지 사본,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서 (발급 가능 시) 등)</li> </ul> <p>[코로나 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, 보호자 확인서 등</li> </ul>
	<p>※다만,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,                      ① 선별진료소의 검사(진료·방문) 결과                      ②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(진단서)                      ※ 비교: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(질환명은 반드시 포함)                      (①+② 두가지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등교 가능함.)</p>	
기저질환 학생 (보건학적 고위험군)	<p>의사의 진단서(소견서)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(폐질환, 만성심혈관 질환, 당뇨, 신장질환, 만성간질환, 악성 종양, 면역저하자 등) 및 장애*를 가진 학생의 경우</p> <p>출석인정 결석** 또는 질병 결석 처리***</p>	<p>의사 진단서에 따름.</p> <p>*보건복지부 '장애복지카드' 소지자에 한하며, 장애복지카드를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                     **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"심각, 경계" 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***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"관심, 주의" 단계이며, 학부모(보호자)가 학교에 사전 연락(전화 또는 문자 등)한 경우</p>